

제 1310 호
1986. 8. 3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문원
편집인: 공보관 이광우
전화: 731-6111-3
인쇄처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35-3337

선 설	공보관	1986. 8. 30	간지 (고급판)	공보국장	김일기
집수일시	1986. 8. 30	시 분 호		보도국장	김일기
처리과	김일기				

시 보

차 례

- ◎ 고 시
 - 제 619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시행 변경허가 3
 - 제 627 호 : 한강어로제한 3
 - 제 630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 4
 - ◎ 공 고
 - 제 477 호 : 청인파직인신규조각 4
 - 제 478 호 :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 5
 - 제 479 호 : 관인폐기 및 교부 5
 - 제 480 호 : 관인교부 및 폐기 6
 - 한강관리사업소제 1 호 : 관인신조공고 7
- (이면계속)

공																			
보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구 공 고	
구로제 23 호 : 관인폐기 및 개자	7
◎ 예 규	
제 482 호 : 불법 낚시 단속 지침	9
◎ 사 련	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19 호

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시행변경허가고시(안)

1. 건설부고시 제 424호('85.9.2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668호('85.10.5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 182호('86.4.2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09호('86.5.13)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도시다. 사업시행 변경내용

계획시설(월곡1 근린공원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제 6조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동사업을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한다.

1986.8.30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도봉구 번동 산 28-3번지일원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

영장: 서울드림랜드 조성

구 분	변 경 처	변 경 후
사업의 규모	휴양시설의 7종시설	과 동
면 적	346,914 ㎡	347,971 ㎡
사업시행자	일 우 공 영 (주) 대 표 이 사 조 용 하	과 동
사업시행기간	'85.11.15 ~ '86.8.31	'85.11.15 ~ '87.12.3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7 호

한 강 어 로 재 한

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로제한

조치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 23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6.8.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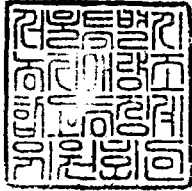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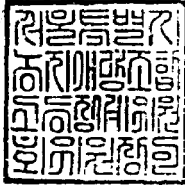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



<p>1. 대상어업: 자망어업, 루망어업, 주 낙어업, 정치망어업 및 보트낚시 2. 제한구역: 서울특별시 한강전역 3. 시행일자: 1986.8.1부터</p> <p>◎ 서울특별 고시제 630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99(’86.8.19) 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</p> <p>*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 조서</p>	<p>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제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6. 8. 3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


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시장	용산구 이태원동 119-24 일대	·대지: 1,960.40㎡ ·건축 연면적: 5,390.48㎡	지하 1층 - 4층중 일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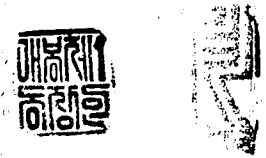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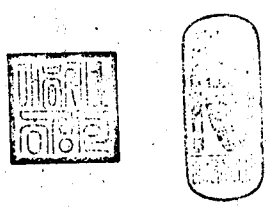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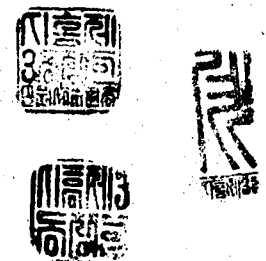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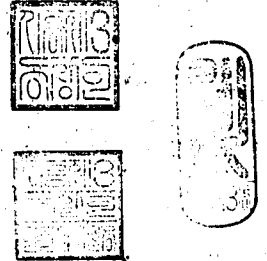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고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77 호</p> <p>청인파직인신규조각</p> <p>서울특별시 농저개량조합 고등정계위</p>	<p>원회분 1986년 8월 25일 구성하고 청인과 직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하였기 관인규정 제 9조에 의거 공고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6년 8월 3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○ 신규 조각인						
인 영						
	공인명 서울특별시 농지개발조합 고등경제위원회 인(정인)			서울특별시 농지개발조합 고등경제위원회 위원장 인(직인)		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8 호</p> <p>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처분</p> <p>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업</p>				<p>제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6.8.30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면허번호	상 호	소재지	대표자	처 분	사 유	
628	㈜세호공업	역삼동 740	장정환	면허취소처분	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	
989	신우전기공사	반포동 113-1	이승일			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9 호</p> <p>관인 폐기 및 교부 공고</p> <p>중앙청 경비대장 직인폐기 및 정부총합청사 경비대장 직인을 서울특별</p>				<p>시 관인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의 구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교부함을 동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.</p> <p>1986.8.30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
1. 사용 및 폐기일자 : 86.8.29 2. 폐기판인 : 중앙청 경비대장인 3. 사용판인 : 정부종합청사 경비대장인		
폐기인영 	교부인영 	
공인명 중앙청 경비대장인	정부종합청사 경비대장인	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80 호 관인 교부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인 및 동사업소 제인,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장의 인 및 동사업소 제인, 서울특별시 한강안전관리대장인 및 동사업소 제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칙 제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. 1986. 8. 30 서울특별시장		
1. 사용 및 폐기일자 : 86.8.29		
2. 사용판인 가.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인 나.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제인 3. 폐기판인 가. 서울특별시 종합종말 처리사업소장의 인 나. 서울특별시 종합종말 처리사업소 제인 다. 서울특별시 한강안전관리대장인 라. 서울특별시 한강안전관리대 제인 ○ 인 영		
교부인영 		
관인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	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제인	

<p>폐기인영</p>			<p>폐기인영</p>	
<p>공인명</p>	<p>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 사업소장인</p>	<p>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 사업소계인</p>	<p>공인명 환경안전관리 대장의인</p>	<p>환경안전관리 대계의인</p>
<p>☉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공고제 1 호</p> <p>관인신조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중랑하수처리장의 적인및 계인을 서울특별시 판인 규칙 제 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조 교부하고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 한다.</p> <p>1986.8.30</p> <p>환경관리사업소장</p> <p>1. 사용개시일 : '86.8.29</p> <p>2. 적인명 : 서울특별시 중랑하수처리장 장인 및 동계인</p>			<p>신조인영</p> 	
<p>구 공 고</p> <p>☉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3 호</p> <p>관인폐기및개각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판인규칙 제 3 조, 제 6 조에 의거 강구 관할 서흥 2 동, 서흥 3 동, 녹 산 2 동, 개동 1 동, 구로 5 동, 구로 6 동의 판 인을 다음과 같이 개각 사용 승인하 고 폐기 하였기 공고함.</p> <p>1986.8.30</p> <p>구로구청장 인</p>			<p>공인명</p> <p>서울특별시한강 관리사업소중랑 하수처리장계인</p> <p>서울특별시한강 관리사업소중랑 하수처리장의인</p>	<p>공인명</p> <p>서울특별시한강 관리사업소중랑 하수처리장의인</p>

<p>1. 폐기 및 개각 관인명 시흥제 2 동장인, 시흥제 2 동계인, 시흥제 3 동장인, 시흥제 3 동계인, 시흥제 3 동장인 민원사부전용, 구로제 5 동장인</p>		<p>독산제 2 동장인, 구로제 4 동장인, 개봉제 1 동장인, 개봉제 1 동계인 2. 승인일시: 1986년 9월 1일 09:00 3. 폐기및개각사유: 마멸로 인한 개각</p>	
인 영		인 영	
공인명	<p>구로구 개봉1동 직인 및 계인 (폐기)</p>	공인명	<p>구로구 개봉1동 직인 및 계인 (개각)</p>
인 영		인 영	
공인명	<p>구로구 시흥3동 직인 및 계인 (폐기)</p>	공인명	<p>구로구 시흥3동 직인 및 계인 (개각)</p>

인 영			인 영		
공인명	구로구 구로5동 장직인(폐기)	구로구 구로5동 장직인(개각)	공인명	구로구 구로4동 장직인(폐기)	구로구 구로4동 장직인(개각)
인 영			인 영		
공인명	구로구 독산2동 장직인(폐기)	구로구 독산2동 장직인(개각)	공인명	구로구 시흥2동 장직인및계인(폐기)	구로구 시흥2동 장직인및계인(개각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예 규</p> <p>◎서울특별시예규제 48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법 낚시터단속지침</p> <p>1. 목 적</p> <p>이 지침은 한강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유어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낚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.</p>			<p>2. 단속대상 및 적용범위</p> <p>한강에서 수산업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하는 낚시행위는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된다.</p> <p>3. 금지행위</p> <p>한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지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가. 채포금지 기간중의 어류물 채포하는 행위 (산란시기 어종보호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)</p>		

어 종	기 간	어 종	기 간
빙 어	3.1 - 3.31	담수새우	7.1 - 7.31
잉 어	5.1 - 6.30	은 어	9.16 - 10.16
쏘 가 리	6.1 - 7.31	연 어	10.1 - 12.31
자 라	6.1 - 8.31		
<p>나. 체포금지체장의 어류를 체포하는 행위 (번식력이 약한 어종의 어린고기 보호 : 수산자원보호령 10 조)</p>			
어 종	체 장	어 종	체 장
송 어	12 cm	자 라	9 cm
쏘 가 리	18 cm	산 원 어	18 cm
<p>다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귀어(황쏘가리, 무태장어)를 채포하는 행위 (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 조)</p> <p>라. 보트를 사공하는 낚시행위(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3 조 동법시행령 제 35 조)</p> <p>마. 지정낚시터 이외의 곳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(경범죄 처벌법 제 1 조 49 호)</p> <p>바. 낚시터나 하천의 부속물을 훼손하는 행위 (하천법 제 37 조)</p> <p>사. 오물을 투기하거나 유해물을 유입 또는 살포하는 행위 (경범죄 처벌법 제 1 조 16 호, 오물정소법 제 8 조)</p> <p>야. 기타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(경범죄 처벌법 제 1 조 25 호)</p>		<p>에 부청장 지휘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, 운영하고, 지역담당 순찰제와 명예감시관제를 적극 활용한다.</p> <p>나. 구 합동단속반은 산업과 직원과 건설관리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환경청장시장의 지원을 받는다.</p> <p>5. 단속공무원의 준수사항</p> <p>단속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단속공무원은 근무시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완장을 왼팔에 둘러 단속공무원임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단속공무원은 낚시인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, 과잉 단속등으로 낚시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</p>	
<p>4. 단속체제</p> <p>가.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구</p>			

<p>다. 근무중 낚시인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일단 낚시물 중단시킨후 부드럽고 친절하게 위반 사실을 지적하여 이해가 가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6. 위반자에 대한 조치</p> <p>가. 낚시인의 수산업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행위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6 하원칙에 의거 작성 징기한후, 관련 증거물을 첨부하여 민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법칙으로 채포한 어획물로서 방</p>	<p>류하여 채포전의 상태로 되돌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속 공무원은 방류를 할 수 있다.</p> <p>7. 일지의 비치</p> <p>단속공무원은 출장 전후와 단속일직을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8. 보 고</p> <p>단속공무원은 단속결과를 구청장에게 일일보고 하고, 구청장은 전권실서를 매 익월 5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유선보고하여야 한다.</p>
--	---

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

위 반 사 항	위 반 자 조 치	조 치 근 거
채포금지기간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 만원이하의 벌금 • 또는 구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산자원보호령 제9 조 • 제 30 조(벌칙)
채포금지 채장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 만원이하의 벌금 • 또는 구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 10 조 • 제 31 조(벌칙)
선연기념물로 지정된 리귀어의 채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월이하의 징역 • 또는 30 만원이하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수면개발촉진법 제 13 조 • 제 18 조(벌칙)
보트를 사용하는 낚시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월이하의 징역 •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수면개발촉진법 제 13 조 • 제 18 조(벌칙)
지정낚시터 이외의 곳 에서의 낚시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 차제도 • 불응시 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범죄처벌법 제 1 조 제 5 호

의 반 사 항	위 반 자 조 직	조 치 근 거
하천의 부속물을 손괴 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오물투기행위 공중질서문란행위	• 2년이하의 징역 •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• 100만원이하의 벌금 • 구류 또는 벌금	• 하천법 제 37조 제 81조 (벌칙) • 오물청소법 제 8조 제 36조 (벌칙) •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8호 • 경범죄처벌법 제 1조
관 계 법 령 달 체		
<p>○ 수산자원보호령 제 9조 (채포금지기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은 다음의 기간중 채포하지 못한다. 4. 잉 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4. 자 라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1. 갈수새우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2. 빙 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3. 쏘가리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</p> <p>제 10조 (채포금지계장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동물로서 다음의 계장이하의 것을 채포하지 못한다. 22. 자 라 9cm 32. 쏘가리 18cm 33. 산천어 18cm</p> <p>제 30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</p>		
<p>2. 제 2조 제 1항, 제 6조, 제 7조, 제 8조, 제 9조 제 31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 1. 제 10조 (이하생략) ○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3조 (유어질서) 수산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이구, 시기, 대상등을 규제할 수 있다.</p> <p>•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35조 (유어행위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어행위는 법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.</p>		

<p>1.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</p> <p>4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의 채포</p> <p>제 18 조 (벌칙)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○ 경범죄 처벌법</p> <p>제 1 조 (경범죄의 종류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.</p> <p>16. (오물방치) 휴지, 담배꽂초, 쓰레기, 악취침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이나 버린 사람</p> <p>25. (음주소란등) 공회당, 극장, 음식점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사람이 타는 기차, 자동차, 배 등에서 몹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.</p> <p>49. (무단출입)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.</p>	<p>○ 하천법</p> <p>제 37 조 (하천에 대한 금지처치) 누구든지 상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천에 유목물 또는 동물인 시체를 버리는 행위 2. 하천의 부속물을 훼손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<p>제 81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제 37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<p>○ 오물청소법</p> <p>제 8 조 (오물의 방지구역) 누구든지 공원, 광장, 도로, 횡단, 하수도, 하천, 운하, 호소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물부기금지구역에 오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된다.</p> <p>다만, 분뇨를 보전설비부설이 없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정수역역상 또는 교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36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 8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---	---

○ 수산업법
제 71조 (법치어획물의 방류명령)
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법 또는
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
채포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하므로

서 채포건의 상태로 회복이
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, 보호에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
포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
수 있다.

사 령

1986년 9월 1일

령제 369 호

성 명	발령부서	원부서	직 급
신현식	세종문화회관	선유수원지사무소	지방기계장 (6등급)
고영주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(사)	시립부녀보호소	지방기계장 (7등급)
양재현	"	건설자재사업소	"
김병수	"	차량정비사업소	지방기계원 (8등급)
홍봉식	"	"	"
박철영	"	남부건설사업소	"
심시중	동부건설사업소	"	"
안창승	한강관리사업소	차량정비사업소	지방전기원 (8등급)
윤청길	마포구	구의수원지사무소	"
김덕성	암사수원지사무소	차량정비사업소	지방기계원 (8등급)
신동혁	서부건설(사) 파견 (86.9.1~87.1.31)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지방기계장 (7등급)
김덕용	종합운동장관리(사) 파견 (86.9.1~86.10.10)	강서구	지방전기원 (9등급)
성방현	시립운동장 파견 (86.9.1~86.10.10)	암사수원지사무소	지방전기원 (9등급)
자재구	시립운동장 파견 (86.9.1~86.10.10)	구의수원지사무소	"
김금성	"	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	지방통신원 (9등급)

령제 1270 호

성명	발령부서	호봉	직급
김영하	남부건설사업소	4 호봉	지방기계원 (9 등급) 시도
김사중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1 호봉	"
이경광	동부건설사업소	8 호봉	"
윤석환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4 호봉	"
김성민	차량정비사업소	3 호봉	"
황남철	"	4 호봉	"
이재훈	"	6 호봉	"
남기만	"	7 호봉	"
임동안	"	5 호봉	"
진석원	"	4 호봉	"
신현택	근로청소년회관	6 호봉	"
정승진	동작구	4 호봉	"
유장선	남부수도관리사업소	7 호봉	"
윤재순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2 호봉	"
박수섭	"	4 호봉	"
안부석	동부건설사업소	6 호봉	"
박치시	차량정비사업소	"	"
전병선	동부건설사업소	4 호봉	"
이영희	성동구	5 호봉	"
조철식	공무원교육원	6 호봉	"
이영춘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3 호봉	"
김성환	"	4 호봉	"
이창복	선유수원지	1 호봉	"
신철현	차량정비사업소	2 호봉	"
정영택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6 호봉	"
한종구	차량정비사업소	"	"
추우범	남부건설사업소	8 호봉	"

성명	발령부서	호봉	직급
이재덕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5호봉	기반기제원(9등급)시보
이상선	건설자재사업소	5호봉	"()
최영기	"	6호봉	"
양종천	구의수원지사무소	5호봉	"
백도기	북부건설사업소	5호봉	"
장익준	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	5호봉	"
조광원	차량정비사업소	6호봉	"
이승걸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4호봉	"
이정훈	독도수원지사무소	5호봉	"
김찬섭	한강관리사업소	4호봉	"
장기오	"	2호봉	"
김승택	"	4호봉	"
안희대	"	5호봉	"
조미희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5호봉	"
신현국	구의수원지사무소	4호봉	"
허영오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6호봉	"
전명호	서부건설사업소	5호봉	"
임문수	"	3호봉	"
정종수	"	4호봉	"
김동식	"	3호봉	"
김우겸	북부건설사업소	6호봉	"
황진석	"	6호봉	"
조시용	"	4호봉	"
이경용	"	5호봉	"
권혁주	남부건설사업소	6호봉	"
조현범	북부건설사업소	4호봉	"
이해철	"	7호봉	"
김종도	건설자재사업소	4호봉	"
전상무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2호봉	"
김연오	"	5호봉	"

성명	발령부서	호봉	직급
남기원	차량정비사업소	6 호봉	지방전기원(9등급)서위
김현영	동부건설사업소	5 호봉	"
장현목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4 호봉	"
문세업	마포구	6 호봉	"
최송종	장묘사업소	4 호봉	"
김병조	구의수원지	3 호봉	"
차준철	암사수원지	2 호봉	"
김준배	강서구	8 호봉	"
오광목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3 호봉	"
맹혁재	차도사업소	6 호봉	"
김형환	차량정비사업소	7 호봉	"
이인성	총무과	7 호봉	"
이근열	마포구	8 호봉	"
강종운	동부건설사업소	6 호봉	"
강태봉	민방공경보통제소	10 호봉	지방전기원(9등급)서위
최승준	죽도수원지사무소	4 호봉	"
강현국	구의수원지사무소	6 호봉	"
안상우	강동구	4 호봉	"
김덕용	강서구	6 호봉	"
윤창한	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	3 호봉	"
장방현	암사수원지사무소	4 호봉	"
차재구	구의수원지사무소	4 호봉	"
김봉호	강남구	4 호봉	"
김경식	강남구	4 호봉	"
김기섭	구의수원지사무소	6 호봉	"
이우열	도봉구	5 호봉	"
허광순	동대문구	4 호봉	"
김영봉	"	4 호봉	"
최수홍	원당수원지	6 호봉	"
장운길	용산구	5 호봉	"

성 명	발 령 부 서	호 봉	직 급
서 춘성	용 산 구	4 호 봉	지방전기원(9등급)시보
이 종상	강 서 구	5 호 봉	"
김 형배	구의수원지사사무소	3 호 봉	"
송 태준	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	6 호 봉	"
김 승현	구 로 구	4 호 봉	"
최 호현	구의수원지사사무소	4 호 봉	"
권 영배	성 동 구	6 호 봉	"
이 용섭	강 서 구	13 호 봉	"
이 종용	마 포 구	12 호 봉	"
지 동성	종 로 구	4 호 봉	"
이 현우	한강관리사업소	5 호 봉	"
김 선신	종 로 구	4 호 봉	"
조 영환	강 동 구	4 호 봉	"
이 병택	한강관리사업소	3 호 봉	"
강 회종	"	4 호 봉	"
서 영호	보라매공원 관리사업소	4 호 봉	"
김 명철	한강관리사업소	3 호 봉	"
김 범수	암사수원지사사무소	6 호 봉	"
김 금성	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	8 호 봉	지방통신원(9등급)시보
배 종수	암사수원지사사무소	4 호 봉	"
문 창호	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	4 호 봉	"
이 재창	민방공경보통제소	4 호 봉	"
김 동주	한강관리사업소	6 호 봉	"
손 종근	독도수원지사사무소	9 호 봉	지방기계수(10등급)시보
김 백일	구의수원지사사무소	12 호 봉	"
이 성남	시립부녀보호소	3 호 봉	"
이 창진	차량정비사업소	7 호 봉	"
박 원규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7 호 봉	"
김 현내	"	15 호 봉	"
박 종일	차량정비사업소	8 호 봉	"

제 1310 호

시

보 1986.8.30 19-19

성 명	발 령 부 서	호 봉	직 급
이 주철	차량정비사업소	7 호 봉	지방기계수(10등급) 시보
정 경덕	구의수원지사사무소	4 호 봉	지방전기수(10등급) 시보
이 동현	대현산배수지사사무소	4 호 봉	
◎ 1986년 8월 25일자			명세 379 호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이 슌기	한강관리사업소	내 무 국	지방행정사무관
최 용호	"	"	지방농림기과
유 학조	"	"	지방토목기과
이 춘호	"	"	지방행정주사
홍 성배	"	시설계획과	"
이 상현	"	전자제안소	"
김 진수	"	내 무 국	지방토목기사
송 환철	"	"	지방농림기사
김 명표	"	은 명 구	지방행정주사보
석 순동	" 파견 ('86.8.25 - 12.31)	관 악 구	지방토목기사보
박 성권	" 파견 (")	동 작 구	지방농림기원
◎ 1986년 9월 1일			명세 380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조 회춘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선박기사에 임함. 4호봉을 급함.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.	해운항만청	선박기사
김 용대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선박기사보에 임함. 2호봉을 급함.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.	"	선박기사보
서 논 특 별 시 장			